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아산시, 서산시, 당진시,
부여군, 청양군, 예산군

내 용

충청남도에서는 도로의 구역 안에 공작물, 물건, 그 밖의 시설의 신설, 개축,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.

「도로법」 제66조 및 충청남도 각 시·군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·징수하고,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·징수하고,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점용허가를 하는 때 또는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점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점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매 년도마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, 특히 2017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기간까지도 당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여 250건, 83,993,339원을 누락한 사실이

있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, 공주시장, 보령시장, 아산시장, 서산시
장, 당진시장, 부여군수, 청양군수, 예산군수는

[시정] 점용료 부과대상임에도 부과가 누락된 점용료 250건, 83,993,339원을 부
과·징수하시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
하시기 바랍니다.